

##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代案)

議案 番號	
----------	--

提案年月日：1987. 10 . .

提案者：保健社會委員長

### 1. 代案의 提案經緯

가.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이 1985年 11月 13日 金令培議員外 101人으로부터 發議된 후 同年 12月 17日 金一潤議員外 19人이, 1987年 10月 5日 朴珪植·朴聖泰議員外 143人이, 同年 10月 5日 金令培議員外 69人이, 同年 10月 24日 李宅敦·韓錫奉議員外 19人이 各各 發議하여 5個法案이 當委員會에 回附되어 왔음.

나. 當委員會에서는 回附된 5個 改正法律案중 2個 改正法律案(金令培議員外 101人, 金一潤議員外 19人 發議)에 대하여 1986年 4月 7日 第 129回 國會(臨時會) 第 5次委員會에서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 報告를 各各 듣고 勞動關係法案審查小委員會를 構成하여 同 改正法律

案을 回附하였으며, 3個 改正法律案(朴珪植·朴聖泰議員外 143人, 金令培議員外 69人, 李宅敦·韓錫奉議員外 19人 發議)에 대하여는 1987年 10月 22日 第 137回 國會(定期會) 第 8次 委員會에서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各各 듣고 法案審査小委員會를 構成하여 同改正法律案을 回附하고 앞서 勞動關係法案審査小委員會에 回附하였던 2個 改正法律案도 새로 構成된 法案審査小委員會에서 一括해서 審査하도록 하였음.

다. 法案審査小委員會는 3次(87.10.23, 10.26, 10.28.)에 걸쳐 同法案을 眞摯하게 審査한 結果 1個의 法律에 對하여 5個의 改正法律案이 提出되었으므로 改正案 內容을 統合하여 單一案을 마련, 1987年 10月 28日 第 137回 國會(定期會) 第 10次 委員會에 報告하여 議決함으로써 5個 法案을 各各 廢棄하고 委員會의 代案으로 本法案을 提出하게 되었음.

## 2. 代案提案理由

企業이 經營危機에 直面하거나 倒産하게 되는 경

우에 勤勞者에게 一定期間의 賃金債權에 對하여는 最優先 辨濟받도록 賃金支給保障을 強化함으로써 最低生活이 保障되도록 하고, 長時間 勤勞로부터 勤勞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特定日에 8時間, 特定週에 48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할 수 있는 變形 勤勞時間制度를 廢止하려는 것임.

### 3. 代案의 主要骨子

가. 最終 3個月分の 賃金은 使用者의 總財産에 對하여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 租稅·公課金 및 다른 債權에 優先하여 辨濟 받을 수 있도록 함. (案 第 30條의 2 第 2項)

나. 4週間을 平均하여 1週間の 勤勞時間이 48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特定日에 對하여 8時間, 特定週에 對하여 48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할 수 있는 變形 勤勞時間 條項을 삭제함 (案 第 42條 第 2項).

공백

法律 第 號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勤勞基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 30 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 30 條의 2 (賃金債權優先辨濟) ①賃金·退職金·災害補償金 기타 勤勞關係로 인한 債權은 使用者의 總財産에 對하여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을 제외하고는 租稅·公課金 및 다른 債權에 優先하여 辨濟되어야 한다. 다만, 質權 또는 抵當權에 優先하는 租稅·公課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最終 3 月分の 賃金は 使用者의 總財産에 대하여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 租稅·公課金 및 다른 債權에 優先하여 辨濟되어야 한다.

第 42 條第 1 項중 “基準으로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第 2 項을 削除한다.

第 94 條중 “使用人은”을 “使用者는”으로 한다.

第 110 條第 1 號중 “第 42 條第 1 項 내지 第 3 項”을 “第 42 條第 1 項・第 3 項”으로 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新 · 舊 條 文 對 比 表

現 行	改 正 案
<p>第 30 條의 2 (賃金債權優先辨濟)</p> <p>賃金·退職金·災害補償金 기 타 勤勞關係로 인한 債權은 使用者의 總財産에 對하여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을 제외하고는 租 稅·公課金 및 다른 債權에 優先하여 辨濟되어야 한다. 다만, 質權 또는 抵當權에 優 先하는 租稅·公課金에 對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 新 設 〉</u></p>	<p>第 30 條의 2 (賃金債權優先辨濟)</p> <p><u>①</u>.....</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u>② 第 1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u> <u>最終 3 月分의 賃金은 使用</u> <u>者의 總財産에 대하여 質權</u> <u>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u> <u>된 債權, 租稅·公課金 및 다</u></p>

現 行	改 正 案
<p>第 42 條(勤勞時間) ①勤勞時間은 休憩時間을 除하고 1 日에 8 時間, 1 週日에 48 時間을 <u>基準</u>으로 한다. 다만,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1 週日에 12 時間 限度로 延長勤勞할 수 있다.</p> <p>②使用者는 當事者間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4 週間을 平均하여 1 週間의 勤勞時間이 48 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特定日에 대하여 8 時間을, 特定週에 대하여 48 時間을  초과하여 勤勞를 시킬 수 있다.</p>	<p><u>큰 債權에 優先하여 辨濟</u> <u>되어야 한다.</u></p> <p>第 42 條(勤勞時間) ①..... ..... ..... <u>超過할 수 없다.</u>..... ..... ..... ..... ..... .....</p> <p><u>&lt; 削 除 &gt;</u></p>
<p>③~④ (생략)</p>	<p>③~④ (現行과 같음)</p>





現 行	改 正 案
條, 第 60 條, 第 61 條, 第 64 條第 1 項, 第 65 條, 第 66 條, 第 68 條, 第 76 條, 第 78 條, 第 79 條, 第 80 條, 第 82 條, 第 83 條와 第 105 條第 2 項에 違 反한 者	..... ..... ..... ..... ..... .....
2. ~ 3. (省 略)	2. ~ 3. (現行과 같음)